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 의 자 : 이해민 · 황운하 · 박은정
서영석 · 서왕진 · 박성준
김한규 · 조인철 · 손명수
양문석 · 이재관 · 김승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·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‘14세 미만 아동’에서 ‘미성년자’로 확대하고,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.

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·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, 아동인 정보 주체에

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등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만 14세 미만 아동이”를 “미성년자가”로, “만 14세 미만 아동의”를 “미성년자의”로 한다.

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, 전항에 따른 통지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하여야 한다.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, 통지 대상 정보,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”을 “아동인 정보주체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·고지·통지 등을”로 한다.

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· ② (생 략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 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④ · ⑤ (생 략)	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미</u> <u>성년자가</u> ----- ----- ----- <u>미</u> <u>성년자의</u> ----- -----.
제20조의2(개인정보 이용 · 제공 내역의 통지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, 통지 대상 정보,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	제20조의2(개인정보 이용 · 제공 내역의 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개인정보처리자가 제22조의</u> <u>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</u> <u>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</u> <u>하는 경우, 전항에 따른 통지는</u> <u>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에게도</u> <u>하여야 한다. 이 때 개인정보처</u> <u>리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</u> <u>수집한 정보를 법정대리인에</u> <u>대한 통지의무 이행의 목적으</u> <u>로 이용할 수 있다.</u>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, 통지
<신 설>	

